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0000
----------	------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000 의원 외 00인

주 문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임성근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임성근

직 위 : 법관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 임성근(이하 '피소추자'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7조),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 제103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27조) 조항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제29조 제3항, 제4항 및 제26조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만 직권남용죄 등 형법 위반 사항은, 향후 피소추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을 경우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므로, 이 소추안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피소추자의 헌법, 법률위반 행위는 다른 피소추자들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2011. 9. ~ 2017. 9.)에 의하여 박병대 법원행정처장(2014. 2. ~ 2016. 2. 대법관 겸임), 임종헌(2012. 8. ~ 2015. 8. 기획조정실장, 2015. 8. ~ 2017. 3.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서 내려온 포괄적인 지시와 활동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이는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오로지 신뢰에 기반하여 사법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피소추자의 지위

피소추자는 1988. 2.경 사법연수원을 수료(17기)하여 1991. 2.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부산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창원지법 거창지원 합천군/함양군법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1. 2. 서울고법 부장판사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다가 2013. 2.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겸임에서 해임되었고, 2014. 2.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한 후 2016. 2.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으로, 본 탄핵소추안 발의일 기준으로 헌법 제101조 및 법원조직법 제5조에 따른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2. 피소추자의 행위

가.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2018. 11. 14.자 임종헌 공소장 64-20면)

1) 2014. 4. 16.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치권 및 여론의 비판과 공분이 고조되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8. 3.경 카토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일본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자,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8. 6.경 카토 타쓰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청와대에서도 8. 7. ‘카토 타쓰야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대처 의지를 표명하였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는 카토 타쓰야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72’, 이하 ‘카토 타쓰야 사건’)이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자, 현직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피해자이고 전 국민적 관심사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핵심 쟁점이므로 재판 결과가 국정에 미칠 정치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중요사건으로 관리하였다.

3)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이 대내외적인 반대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와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2014. 9.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항고심 효력정지 결정, 2015. 2.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유죄판결 등으로 청와대 내에서 사법부가 국정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판이 대두되고, 2014. 12. 하순경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지자, 사법부의 위상 강화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카토 타쓰야 사건의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청와대에 적극 협조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이와 관련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소추자는 판결 선고 전,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게 하라는 임종헌의 요구를 재판장 이동근에게 전달, 지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 임종헌은 2015. 3. 하순경 피소추자에게 카토 타쓰야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계획을 전달하며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진행하다가 카토 타쓰야의 기사가 허위임을 확인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달라. 법원행정처도 대통령의 행적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재판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소추자는 그 무렵 재판장 이동근에게 그러한 요청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이동근은 2015. 3. 30. 이 사건 4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정운회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피고인이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되었다고 본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검사와 변호인에게 향후 '공공의 이익과 비방목적 유무'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다.

2) 피소추자는 판결이유 및 선고 시 구체적 구술내용과 관련한 임종헌의 지시를 이동근에게 전달하고 이동근의 재판 내용에 개입하였다.

이후에도 피소추자는 임종헌에게 이 사건 재판진행경과 등 수시로 보고하였다. 그러던 중 피소추자는 2015. 10. 하순경 임종헌으로부터 '재판부가 어떤 판결 선고하는지, 어떤 내용을 판결이유로 실시할 예정인지 알아봐달라'는 요구를 받아 2015. 11. 초순경 '무죄선고가 불가피하고 재판장이 법리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에 임종헌은 피소추자에게 '① 무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판결이유에 반드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실시하고, ② 명예훼손이 인정되나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고, ③ 판결 선고 말미에 카토 타쓰야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달라'는 취지를 재판장 이동근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 12.경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피소추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외

교부에서 카토 타쓰야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가 제출될 것이니 재판장이 판결 선고시에 그 내용을 고지해달라'고 재요구하였다.

이에 피소추자는 2015. 11.경 이동근에게 카토 타쓰야의 판결문 외에 '전체적인 판결이유 요약, 카토 타쓰야의 행위에 대한 평가'등을 판결 선고 말미에 고지하고, 그 고지내용에 대해 사전에 자신에게 검토를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피소추자는 2015. 11. 11.경 이동근으로부터 판결 선고 말미에 고지할 내용이 기재된 구술본 초안을 전달받아 확인한 결과, 무죄판결 이유가 '피해자 박근혜는 공인이어서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 정윤희는 명예훼손은 성립하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자, 구술본 초안을 수정하여 전달함으로써 임종헌의 요구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로 마음먹고, 11. 17.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면 청와대 측에서 서운해 할 것'이라는 이유를 부기하면서 구술본 초안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 존재인 이상,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그 수정본을 이메일로 이동근에게 전달하였다.

피소추자는 11. 18. 다시 이동근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판결 이유와 관련하여 '결론 부분에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시'하고,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나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소추자는 2015. 11.중순경 임종헌에게 '이동근이 판결이유 및 선고시 구술내용에 대한 법원행정처 요청을 수긍했다'는 취지를 보고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판결 선고 직전인 2015. 12. 중순경 '외교부에서 카토 타쓰야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으니 판결 선고를 하기 전에 그러한 취지를 언급해달라'는 임종헌의 요구사항을 다시 이동근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근은 종래 ‘피해자 박근혜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방목적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판결이유를 ‘피해자 박근혜에 대하여 명예훼손은 성립하나 비방의 목적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변경하고, 2015. 12. 17. 선고기일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의 카토 타쓰야에 대한 선처요청’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카토 타쓰야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까지 부연설명하면서 무죄 선고 대상인 카토 타쓰야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질책하는 한편, 판결 선고가 길어짐에 따라 착석을 요청하는 그로 하여금 기립한 상태에서 3시간 동안 판결 선고를 듣게 하였다.

3.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

가. 관련 규정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이러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

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은 헌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의 내용이, 사법권의 가장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관한 대원칙인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중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판독립은 법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세력 특히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제4항,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

현의무,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의 당연한 기본원칙인 권력분립, 3권분립원칙,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재판업무 자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법관이 사법행정권자의 지위에서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실현의무에 기초하여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판의 독립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법관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 해당 법관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지시나 요청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위법한 지시에는 불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29조 3항, 4항, 제26조는 수석부장의 경우 법원장을 보좌하여 해당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한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석부장의 법원장을 보좌하는 사법행정 역시 앞서 언급한 헌법 제1조, 권력분립원칙,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3차보고서의 판단기준

한편 3차보고서 19쪽에서는 의혹별 조사결과를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평가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정책결정을 통하여 실행행위로 나간 경우 뿐만 아니라 문서작성행위, 그

작성지시행위, 논의 과정, 정책결정행위 등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면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훼손하였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그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분류,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행위별 평
가이며 각 행위자별로 인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
된 경우 남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대법원 특조단 스스로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법관의 기본권 침
해나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고 위 기준인 재판의 독립 등은 헌법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므로, 결국 3차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헌법을 중대
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차 조사단은 위 헌법상의 기준에 비
추어 정도가 남용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적절로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부적절
로 평가된 부분도 다수의 부적절이 누적된 경우에 인적 책임을 물을 때는 남
용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실조사의혹을 받아 왔던 3차 조사단조차 사법행정권의 남용
또는 부적절로 판단한 행위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등 헌법가치의 중대한
위반으로 적어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탄핵소추안에서는 이 기준을 주요
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기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 11. 19.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으
로서 법관 탄핵 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법관탄핵의 판

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한편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서 원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건 처리에 관하여 동료나 선배 법관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의 조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과 비교하여)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나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절대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어떠한 선의의 의도나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 포섭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법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스스로 제시한 이러한 법관 탄핵의 판단 기준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헌법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기준과 함께 특히 임종헌 공소장에 제시된 행위태양의 중대한 헌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기준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라.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1) ‘카토 타쓰야 사건’ 에 대한 재판 개입 행위

피소추자는 카토 타쓰야 사건과 관련하여 임종현으로부터 청와대에 유리한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그대로 당해 사건의 재판장 이동근에게 전달하고 지시하여 이동근이 그와 같은 취지의 중간판결을 하면서 검사와 변호인에게 향후 ‘공공의 이익과 비방목적 유무’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하여 임종현에게 보고하였고, 특히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유와 판결 선고시 재판장이 고지할 구체적인 구술내용에 대하여 임종현의 지시를 받아 이동근에게 전달하는 한편 이동근으로부터 받은 판결이유 및 구술내용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재차 이동근에게 전달,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위 전국법관회의의 의결사항 기준에 따를 때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거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의견의 제시를 넘어 판결 선고 및 구술 내용까지 스스로 수정하는 등 특정 재판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2) 헌법 및 법률 위반의 내용

피소추자는 수석부장판사로서 헌법 제103조 재판의 독립원칙 및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되어야 함에도,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와 아무런 관계없는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지시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연결고리 또는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법이 명시한 권한을 넘어 일선 재판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또한 대

통령이 피해자인 당해 사건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와대의 입장과 요구에 부합한다는 점을 능히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의 위상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 또는 '행정부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염두에 두고서 청와대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게 담당 재판장에게 지시한 것이다.

이로써 피소추자는 법원 특조단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고 전국법관회의에서 절대 금지한 '법원의 위상 제고 및 행정부와의 협조관계 유지'라는 특정 이익을 위하여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이 정한 법관의 재판상 독립 원칙 등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 공직자윤리법 상의 부정한 특혜금지의무,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부패행위금지 및 품위손상금지의무 등 피소추자의 직무수행원칙들과 관련한 법률들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4. 탄핵의 정당성

가. 대통령 탄핵과의 차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파면결정을 선고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헌법, 법률 위반의 정도'와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달리 법관 탄핵에 대하여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004헌나1).

먼저 법관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즉 국가적 손실, 사법질서 혼란 등

을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달리 그 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그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숫자도 160여명에 이르며, 대법관의 경우조차도 13명에 이른다. 그리하여 설령 위 인원 중 극히 일부에 대하여 탄핵결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일시적인 공백을 동료 법관이 메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이나, 재판의 공백 등 사법질서의 혼란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헌법, 법률위반의 정도를 살펴보면, 단순히 법관 1인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 피소추자들 역시 하급 공무원처럼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출세가 보장된 일선 법원의 사법행정라인인 수석부장으로서의 근무를 통해 상고법원안 관철이라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헌법상 결코 침해되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

한편 법관의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헌법질서 수호와 국가적 이익, 특히 국민의 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이 헌법, 법률위반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법관 파면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서도 부정적 측면은 적은 반면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형량을 해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

한편 피소추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다, 이들이 법관 탄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하여만 탄핵소추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최고수위가 정직 1년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을 단지 법관 징계절차에 의하여 최고 정직 1년밖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법 불신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사법농단에 관여한 피소추자는 정직처분으로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가 아니라 탄핵을 통한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이른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서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사법관료’로 변모해온 피소추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단계에서부터 발탁되거나 일선 법원의 사법행정라인인 수석부장에 임명되어 중책을 맡게 됨으로써 나중에 법원장을 거쳐, 대법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른바 출세가 보장된 법관 엘리트이다.

이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차장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들을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에서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의 피해자 행세를 통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 동정론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대법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물

며, 헌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의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로 하여금 재판장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법감정 과도 맞지 않는데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피소추자로부터 재판받게 되는 당사자나 대리인 변호사들로부터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받게 될 것이다.

5. 결론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오로지 고위법관들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소위 법에 대해 가장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설마 스스로 법을 어길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법관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 마지막 믿을만한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던 법관들에 의하여,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대법관 이하 고위법관들, 법원 행정처의 엘리트 법관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관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법관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사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헌법상의 재판독립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무너진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아무리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헌법위배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의원 등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관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 5. 25.자 조사보고서
2. 2018. 11. 14. 자 임종헌 공소장